성인학습지원센터운영규정 5-1-49

규정번호 5-1-49
제정일자 2019.7.1
최근개정 2025.6.23
개정차수 7차 개정
관리부서 성인학습지원센터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평생교육본부 성인학습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5.1.23.,2025.3.31)

제2조(직무) 성인학습자의 학습관련 입학전문상담, 학습활동 지원, 진로·취업상담 및 심리상담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 및 직업역량 등을 증진시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, 성인학습자 대상의 교수학습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제3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<삭제(2023.06.19.)>
2. 성인학습 관련 교육의 질 관리 개발 및 운영
3. 성인학습 관련 전공교육과정, 기초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4. <삭제(2023.06.19.)>
5. 성인학습 관련 비학위과정 개발 및 운영
6. 성인학습 관련 이러닝 교과목 개발 및 운영
7. 성인학습 관련 학생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8. <삭제(2023.06.19.)>
9. 성인학습 관련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
10. <삭제(2024.7.24.)>
11. 기타 성인학습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(호변경 2021.01.21.)

제4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통할한다.

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20.07.27.)

③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를 담당할 직원과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의2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 위원은 성인학습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관계전문가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성인학습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심의, 의결, 추진
2. 성인학습정책에 관한 사항 지원
3. 성인학습강좌 콘텐츠 질관리
4. 기타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진

[본조신설 2025.6.23.]

제5조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우리 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1호제4호제8호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제10호)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적용하되,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1조)

부 칙(직제규정) <2025.3.3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,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

<1> - <13> (생략)

<14> 성인학습지원센터운영규정(5-1-49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의 “평생교육원”을 “평생교육본부”로 한다.

<15> - <17> (생략)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하되,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(제4조의2)